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자문업의 발전방향

Korean Academic Society of Financial Planning

- 일시 2013년 5월 2일 (목) 15:00 ~ 17:30
- 장소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홀
- 주최 사단법인 한국FP학회
- 후원 삼성생명, 한국FPSB

2013 FP학회 춘계세미나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자문업의 발전방향

사회 : 김도성 (서강대학교 교수)

14:30~15:00	등 록
15:00~15:10	인사말 김대식 (교수, 한국FP협회장)
15:10~15:40	주제 발표 1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자문업 원승연 (명지대학교 교수)
15:40~16:10	주제 발표 2 선진 금융자문업 현황과 금융자문업의 발전 방향 정재만 (숭실대학교 교수)
16:10~16:20	휴식
16:20~17:30	패널 토론 및 질의 응답 좌장 : 남상구 (고려대학교 교수) 토론 : 노형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박사) 최현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김일선 (투자자보호재단 상무) 박현문 (한국재무설계 대표)

2013 FP학회 춘계세미나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자문업의 발전방향

주 제 발 표 1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자문업 / 1

원 승 연 (명지대학교 교수)

주 제 발 표 2

선진 금융자문업 현황과 금융자문업의 발전 방향 / 15

정 재 만 (송실대학교 교수)

2013 FP학회 춘계세미나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자문업의 발전방향

주 제 발 표 1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자문업

원 승 연 (명지대학교 교수)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금융자문업

원 승 연 (명지대)

목 차

- I. 연구 배경 및 목적
- II.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 III.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평가 및 개선 방향
- IV.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자문업
- V. 결론: 금융자문업 발전에 대한 함의

I. 연구 배경 및 목적

1. 배경

- 2008년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인식 확대
- 금융당국, 2011년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추진 중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인(“이하 금소법인”)에서 금융상품자문업 정의

2. 목적

- 금소법인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한 광범위한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금융시장 및 금융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므로,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
- 금융상품자문업에 대한 규제 내용은 금융자문업의 향후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
 - ⇒ 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금소법안을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금융자문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

II.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1. 추진 경과

- 배경
 - 2008년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의 국제적 흐름
 - 한국에서의 KIKO,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 인식 제고
- 취지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조식을 갖추
 - 업법권별 규제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포괄할 필요성 존재

II.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금융소비 전 과정(사전 정보제공, 금융상품 판매, 사후피해구제)을 체계적으로 규제
-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의 개편 입법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 성과
 - 2011년 11월, 금융위 급소법인 국회 제출하였으나 자동 폐기
 - 2012년 5월, 폐기되었던 안을 다시 국회에 상정했으나 계류 중
 - 박근혜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 T/F 출범 (6월 방안 제출 예정)

II.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2. 주요 내용

①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기능별 규제 체계

-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판매 행위 전반을 일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능별 규제체계 도입
 -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체계에 초점
 - 사전적인 불원전 판매 방지 체계 구축

② “동일 기능-동일 규제” 체계

- 개별 금융업법상 차이가 존재하는 판매행위 규제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규제원칙을 규정
- 상품유형에 따른 위험 및 특성을 감안하여 상품별로 규제 내용 차별화

II.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7

금융상품의 구분 기준

구분	개념	대상(예시)
예금성상품	은행 예금과 같이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	예적금 등
투자성상품	펀드 상품과 같이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원 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신탁상품
보장성상품	보험상품과 같이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장래에 보험사 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금융상품	일반보험상품 등
대출성상품	대출상품과 같이 먼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전을 빌려 사 용하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금융상품	대출상품, 신용카드 등

II.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8

③ 금융상품 판매의 규제 원칙

규제원칙	개념	대상
적합성원칙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 유해 중 원칙	모든 유형 (예금성·보장성상품은 일부)
적성성원칙	금융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한 상품이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적절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알려주도록 하는 원칙	투자성상품, 보장성상품 인부
설명 의무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	모든 유형
속성상품계약 체결금지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금융상품과 같이 구매하 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대출성상품 등
부당권유행위 금지	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하는 등 부당한 권유행위 금 지	모든 유형
광고 규제	금융상품 광고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금지되는 행 위에 대한 규제	모든 유형

II.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④ 사후 제제 및 구제 방안의 강화

- 과징금 제도 도입
 - 위반행위에 대해 발생한 수입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금융회사와 대리·송개업자간에 사용자 책임을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으로 도입
 - 금융회사가 대리·송개업자의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갖도록 함
- 소송중지제도 도입
 - 소액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원료될때까지 금융회사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II.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⑤ 금소법안의 금융업 및 금융업자 정의

- 금융상품 판매업: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대리·송개
 - 금융상품지점판매업: 계약체결 또는 권유 및 청약
 -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을 대리하거나 중개
- 금융상품 자문업: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상품 구매 결정에 관한 자문(“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것
- 금융업자 정의
 - 기존 금융업법의 금융기관은 자동적으로 규정되며, 금소법안에 의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 또는 자문업자 등록 가능

II.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기존 금융업자에 대한 금소법안의 규정

금소법인의 금융업자	기존업법의 금융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은행 (은행법),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 (자본시장법) 투자지문업자 (자본시장법) 보험사 (보험업법) 신흥저축은행 (신흥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경영여신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투자권유대행인 (자본시장법)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및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상품지문업자	투자지문업자 (자본시장법)

II.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⑥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 위상

-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하여 준 독립기구화 함

□ 업무

- 전속적 업무: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
- 사실조사권 및 조치 건의권 부여 → 금융위 또는 금감원에 적절한 조치를 건의
-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위한 감독, 검사, 제재권은 부여하지 않음

Ⅲ.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평가 및 개선 방향

1. 금소법안의 의의와 한계

- 지금까지 개별법 차원에서 상이하게 규제되어 온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반적으로 권장하는 포괄적인 법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개선
 - 금융상품별 차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체계 수립
 - 사후규제 및 구제 조치의 강화
- 그러나 금융상품판매 중심의 사전적 규제가 중심을 이루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를 포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

Ⅲ.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평가 및 개선 방향

- 무엇보다도 금소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질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저해해온 금융산업의 문제점과 금융감독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개선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나, 금융위의 금소법안은 규제 당국의 이해 관계가 지나치게 반영된 법안이라고 판단됨
- 또한 금소법안의 규제 내용은 국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흐름에 벗어나서 금융업계의 기득권을 용인하는 것으로 귀결

Ⅲ.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평가 및 개선 방향

2.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및 개선 방향

-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 금융기관이 건전성 유지를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위험을 전가 → 금융소비자 피해 확대
 - 과도한 금융소비자 위험 → 미시건전성 유지에도 불구하고 거시건전성에 문제 발생
- 과거의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공시제도 강화, 광고 및 선전에 대한 규제)
 -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인지 능력 및 합리성의 한계(금융상품 및 기법의 복잡성으로 금융 소비자가 그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려움)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었음

Ⅲ.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평가 및 개선 방향

- 금융소비자 보호의 새로운 인식
 -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간의 금융이해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금융기관의 의무를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두 가지 개선 방향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규제 및 감독의 강화
 - 금융기관의 인센티브 조정 : 금융기관의 이윤 동기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반하지 않도록 제도 및 법제의 개편

Ⅲ.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평가 및 개선 방향

3. 금소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① 금융상품 판매의 제한

- 금소법안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품 판매를 제한하기 보다는 일반 및 전문 금융소비자를 차별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성이 떨어짐
- 금융소비자의 제한적 합리성을 감안할 때, 일정한 위험수준 이상의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거나 유인을 제거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
 - 미국: 금융상품판매 시 복잡한 상품과 단순한 상품을 동시에 제시해야 함
 - 유럽: 위험성이 높은 상품의 수수료 수취를 제한

Ⅲ.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평가 및 개선 방향

② 금융상품판매의 경쟁 구조 확대

- 금융상품의 불안전판매는 금융기관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불석절하거나 위험이 높은 상품을 권유하는데 있음
- 한국에서는 금융상품공급기관이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해서 금융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숨이고 불안전판매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임
- 그러나 금소법안은 불안전판매 문제를 진입규제와 금융상품공급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함
 - 금융상품 가격 및 수수료에 대한 직접 규제

Ⅲ.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평가 및 개선 방향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시장 경쟁을 확대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수단과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금융상품공급자인 금융기관들로부터 독립된 판매업자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판매업자의 금융상품공급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이를 금융기관의 식판과 직접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가 우려된다면, 앞서 지적과 같이 제한된 위험의 금융상품 판매만을 허용하면 됨

Ⅲ.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평가 및 개선 방향

- ③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방안의 개선
 -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주된 현안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미분리 : 금융위원회가 양 기능을 동시에 수행
 -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 감독의 미분리 : 금융감독원이 감독권 독점으로 금융감독기능의 이해상충 발생 (예: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 금소법안의 문제점
 - 금융위의 권한 확대 : 금융정책 목표를 우선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경시 초래 가능
 - * 금융소비자 보호의 감독 집행 기능이 금융위 권한?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권한 미흡: 금융감독기구로서의 감독, 조사, 제재권이 없음
 - 금소법안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현행의 문제점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계약

IV.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자문업

1. 금융자문업의 유형과 금소법안의 정의

□ 금융자문업의 유형

- 투자자문 / 금융상품자문 / 일반 자산관리(재무설계 포함) 자문

□ 금소법인의 정의 : 금융상품자문업에 대한 개념 혼란

-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상품의 구매 결정'에 대한 자문(법 2소) > 부수적 자문 (금융상품 판매에 부수되는 자문)
-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독립하여 자문업무 수행', '금융상품 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법 23조) → '부수적 자문의 독립성? 아니면 별도의 비부수적 자문?'
-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법 23조) → 선관의무는 주로 투자자문을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
- '금융상품자문업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운용 전략 등에 종합적인 선선행을 제공하는 금융업)을 신설'(금융위 설명 자료) → 재무설계

IV.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자문업

2.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관련 주요 내용 및 평가

□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요건

- 법인으로 진입 자격 제한
- 최소자본금 5억원 / 취급상품별로 1인의 자문인력 확보
- 대리허용은 금지하여 보험대리점에서 소속 재무설계사를 통한 자문서비스 제공 차단

□ 주요 규제 내용

- 동일한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상품을 비교, 자문
- 거래관계 있는 금융회사 공개
- 금융상품판매업자와의 독립성
- 판매업 겸영 : 현행 개별 금융법상 규정된 판매업만을 겸영 대상으로 허용
- 선관의무

IV.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자문업

-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한 일차적인 배경은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행위가 실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발생하는 보험대리점 및 재무설계 전문회사의 자문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을 메우고자 한 것임
 - 일부 보험대리점이 실행하고 있는 자신운용에 관한 자문서비스 실행 차단
 - 자문이 금융상품판매 목적으로 실행된다고 인식
 - 자문시의 배상책임 확보 문제
- 금융상품자문업에 대한 규제 내용은 금융기관을 방라한 금융상품자문과 관련한 규제가 아니라, 현행 금융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대리점과 재무설계 전문회사에 제한하여, 이들의 금융거래 행위 전반을 규제하는 수단으로서 이용 가능함
- 즉, 이들 회사에서 금융상품의 민원이 제기될 때, 동 법이 제재의 근거로 기능할 것임

IV.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자문업

3. 금융자문업과 관련한 금소법안의 문제점

① 규제 대상의 불명확성

- 부수적 자문의 독립성 규정: 부수적 자문의 독립성은 편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면 문제가 없으나, 소지이나 인원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소항은 실현 불가능

② 규제의 형평성

- 금융상품판매업자: 적합성 원칙 적용
- 금융상품자문업자: 선관의무 적용하여 훨씬 엄격한 의무 부과
 - ⇒ 동일한 부수적 자문을 시행하는 경우 양자의 규제 수준에 차이 존재.

③ Whole of Market 적용

- 불완전판매의 핵심은 금융기관이 동일유형 상품간에서 선택을 유도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을 권고하는데 있음

IV.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자문업

- 동 조항 적용의 전제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취급이 가능해야 하나, 현재와 같이 금융상품판매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자문에 대한 규제는 과도함
- 금융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본다면,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유형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그로 인한 잘못된 자문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적정함
 - 예) 영국의 IFA 제도 (독립자문업자와 제한자문업자로 구분)
- 은행 및 증권에서의 자사 및 계열사 상품권유 및 특정 상품유형의 권유에 대한 규제가 균형적으로 삽입되어야 함
- ④ 총평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쟁체제를 오히려 약화
 - 동 법은 불균형한 규제대상 및 수준의 적용 등으로 현재의 금융상품공급기관 중심의 산업구조를 존속하는데 기여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채널에 의한 공급업자에 대한 선제 기능을 약화

V. 결론 : 금융자문업 발전에 대한 함의

- 금융자문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나, 금소법안은 매우 제한된 영역에 대한 불균형한 규제에 의하여 오히려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하시켜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할 가능성 존재
 - 한국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의 상당수는 공급자의 독과점적인 성격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체계를 확산시키는 것 필요함
- 이러한 편견에서 볼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금융자문업의 발전보다는 규제적 목적으로 금융상품자문업을 규정에 포함시켰으며, 동 법안이 독립적인 금융자문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움
 - 단기적으로는 규제에 의한 비용 증가 예상
- 다만 법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규정된 만큼, 향후 규제 의도와 상관없이 독립된 금융자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게 된다면 금융자문업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음

V. 결론 : 금융자문업 발전에 대한 함의

-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금소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 금융기관 및 금융규제당국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규제 체계
 - 금융위의 권한 확대로 귀결될 금융감독체계의 개악
- 따라서 차제에 기존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인은 대폭적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자문업과 관련한 법안 소항 역시 변경되어야 함
 - 금융상품공급과 판매간의 분리 및 상호건제 및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경쟁체계 도입
- 법률의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자문업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판매와 무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부적인 역량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높은 자질과 윤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체적인 동업자 관리가 필요함

2013 FP학회 춘계세미나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자문업의 발전방향

주 제 발 표 2

선진 금융자문업 현황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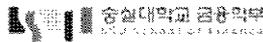
금융자문업의 발전 방향

정 재 만 (숭실대학교 교수)

선진 금융자문업 현황과 금융자문업의 발전방향

정재만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201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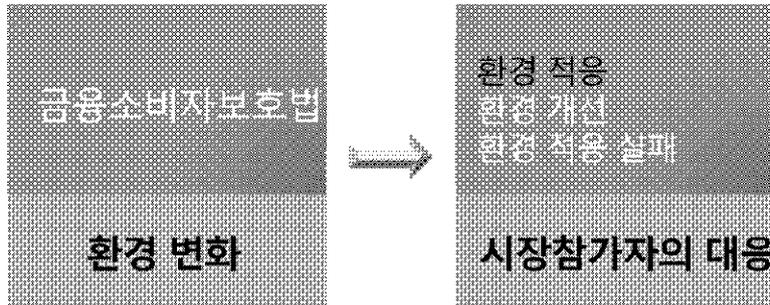
금융소비자보호법

환경변화



환경 적응
환경 개선
환경 적응 실패

시장참가자의 대응



- 금융소비자보호법안(2012.7)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1.11)
- + 입법취지에 비추어 추론

상품유형, 판매행위 별 규제

2012	직판	중개대리	자문
예금성	은행		
보장성	보험회사	보험취계사, 보험내리점 보험중개사	
투자성	투자매매회사, 투자중개업자 투자임업업자, 신탁업자	투자금융대행인	투자자문사
대출성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회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할부 에이전트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1.11)

-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모든 상품유형의 자문이 가능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 자문이 가능한 듯
- (상품유형별) 중개, 대리업과 자문업을 겸영하는 경우 모든 상품유형의 판매와 자문이 가능하지만, 판매업무와 자문업무에 임직원 분리
- 투자자문업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 투자성 상품 자문 허용

금융상품자문업의 업무범위

한경리용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상품 구매 결정에 관한 자문[2조 3호]
-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운용 전략 등에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1.11)]

금융자문업: 금융상품자문 + 재무설계 + (유가증권) 투자자문

- 유가증권 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에 정의되어 있으므로 배제
- 재무설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할 듯
- 펀드랩(자문랩)에 대해서는 불명확
- 펀드플랫폼에 대해서는 불명확

5

금융상품자문업 vs. 투자자문업

한경리용

2012	금융상품자문업	금융상품판매업
행위	자문	직접판매, 대리, 중개
보수 지급자	고객	직접판매업자
보수형태	지문수수료(Pee)	판매수당(Commission)
행위의무	선관의무	직정성원칙
조언형태	독립자문	실명판매
경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업무와 투자업무의 임직원 분리 • 위탁관계 직접판매업자 표시 	

- ✓ 직정성원칙[4조]: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한 상품이 해당 소비자에게 직접하지 않을 경우 알려주도록 하는 원칙"
- ✓ 선관의무[23조 1항]: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자문업자가 이해상충을 발생시키지 않고, 오로지 고객의 투자 목적과 이해만을 염두에 두고 자문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

-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자문업을 할 유인은 많지 않음

6

어떻게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가?

환경 적응

보험판매대리 중개업자

- 보험판매대리. 중개업 + 투자권유대행인
- 보험판매대리. 중개업 + 투자권유대행인 + 금융상품자문업
 -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한 보험판매대리. 중개업자의 투자권유대행인 허용이 폐지될 가능성

투자자문업자

- 투자자문업 + (투자성) 금융상품자문업
 - ✓ 금융상품자문업무만으로 수익성?
 - ✓ 펀드랩과 자문랩이 가능?

투자일임업자

- 투자일임업 + 투자권유대행인 - (투자성) 금융상품자문업
 - ✓ 보험판매대리. 중개업자를 인수하여 종합 금융상품자문업도 가능
 - ✓ 도매고객 영업 위주이던 투자일임업자가 소매고객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
 - ✓ 제판분리에 역행

7

환경 개선

금융소비자보호법

환경 변화



환경 적응
환경 개선
환경 적응 실패

시장참가자의 대응

- 선진 금융자문업 현황

8

어떻게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가?

환경 개선

미국의 투자자문업

재무설계 + 금융상품지문 + 유가증권 투자자문 + 유가증권 자산운용
 . 자문수수료(fee) 중심의 보수체계가 가능
 .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영국의 독립금융자문업

금융상품판매 + 재무설계 + 금융상품자문(펀드랩, 자문랩, 펀드플랫폼 포함)
 . 독립금융자문업의 활성화; 제판분리
 . 2009년 RDR(Retail Distribution Review) 개정

호주와 금융자문업

금융상품판매 + 재무설계
 . 2010년 FOFA(Future of Financial Advice) 개혁

판매와 자문을 분리할 수 있나?

환경 개선

미국 투자자문사 유형별 비중(2006)

구분	이중등록	브로커-딜러	브로커-딜러 대리인	투자자문 대리인	투자자문
비중	67%	1%	8%	19%	19%

자료: Hung et al.(2006)

- 미국에서는 **브로커-딜러** 또는 **브로커-딜러 대리인**의 회사수 비중이 **9%**
 - ✓ 투자자문사의 규모가 현저히 작은 것을 감안한다면, 브로커-딜러 비중은 **9%보다 현저히 높을 것임**
 - ✓ 이중등록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판매와 자문을 겸업**
 - ✓ 미국에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도입된다면, **최소 9% 이상을 차지하는 브로커-딜러는 투자자문을 하지 못하게 될**

영국 금융상품 판매채널별 비중(2009)

구분	IFA	다중전속 대리점	단일전속 대리점	단일전속 방카슈랑스	다중전속 방카슈랑스	직접 판매
비중	48%	4%	9%	12%	24%	3%

자료: OXFERA(2009)

- IFA의 비중이 48%이고 직접판매의 비중은 3%에 불과함
 - ✓ 판매와 자문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
 - ✓ 영국에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도입된다면, 48% 비중의 IFA는 금융 상품판매를 할 수 없게 됨

- 한국: 금융상품판매업의 적정성원칙과 금융상품자문업의 선관의무
- 미국: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 ✓ 단일 선관의무 기준(Unitary Fiduciary Standard): 개인 고객에게 투자자문을 수행할 때 투자자문업자와 브로커-딜러에서 단일한 선관의무 기준을 적용
 - ✓ 판매업자인 브로커-딜러와 자문업자인 투자자문사가 사실상 동일한 투자자문 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

미국 투자자문의 보수비중(2006)

구분	자산액 비례	시간 비례	투자건 비례	고정수수료	판매수당	성과급	기타
비중	41%	19%	1%	2%	5%	9%	4%

자료: Hinger et al.(2006)

- 미국에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도입된다면, 5%의 판매수당, 9% 성과급은 받지 못하게 됨
 - ✓ 미국의 투자자문업은 본질적으로 유가증권 자산운용업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재무설계의 보수비중(2009)

구분	판매수당	일회 수수료	고정 수수료	무료	기타
비중	39%	20%	15%	13%	15%

자료: OFRA(2009)

- 무료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13%
 - ✓ 영국에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도입된다면, 39%의 해당하는 판매수당은 받지 못하게 됨

자문수수료만으로 수익성이 유지?

한경 개인

- 영국의 2009년 RDR(Retail Distribution Review)
 - ✓ 판매수당(commission) 지급 금지: 금융상품공급자가 금융자문업자에게 판매수당 지급 금지
 - ✓ 그러나, 금융자문업자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님

구분	미국	영국	한국
판매자와 자문의 분리	○	×	○
판매자와 자문의 대리금지	×	×	○
자문과 판매수당의 분리	×	○	○

15

자문수수료만으로 수익성이 유지?

한경 개인

- 호주의 금융자문업자
 - ✓ 85%는 금융상품 공급자와 계열관계이며, 나머지 15%도 금융상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수당(commissions)을 지급받고 있음
 - ✓ 독립금융자문업자조차도 13% 정도만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자문수수료(fee)로 획득
 - ✓ 금융자문업자의 보상체계를 공시
 - ✓ 자문수수료(fee)의 갱신서류에 고객의 동의가 있어야 갱신

16

어떻게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가?

환경개선

Market Impact

- 금융직접판매업자의 금융상품자문이 활성화될 것이다.
 - 제판분리의 역행
- 투자일임업자의 금융상품자문이 활성화될 것이다?
 - 제판분리의 역행
 - 현재 금융상품자문을 하고 있나?
- 금융상품판매내리. 중개업자의 금융상품자문은 사라질 것이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1.11)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금융상품자문업을 육성하여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내실있는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개선방향

- 해외에서는 법 개정시 "Market Impact Study"를 수행
- 판매와 자문의 완만한 분리
- 자문과 판매수수료의 완만한 분리

17

금융상품자문 전문인력 자격제도

현행

- 상품유형별로 관련 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등록해야 함
 - ✓ 금융상품자문은 모든 상품유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업종 별 자격시험 제도는 부적합

해외사례

- 미국: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감독기관, 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부여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민간기구의 인증자격 취득 시 공인자격시험의 면제가 이루어짐
- 영국: 민관합동기구인 FSP(Financial Skills Partnership)에서 금융관련 자격제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영역에 따라서는 주권기관이 민간기구나 대학교인 경우도 있음
- 호주: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에서 공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공인교육기관이 민간기구나 대학교인 경우도 있음

18

금융관련 중시부적격자 명단 공개

한행

- 2010년 6월 공청회 발표자료에서 제안되었으나 2012년 7월 금융소비자보호 법안에서는 제외됨

해외사례

- 영국의 FSA: 업무금지자로 지정된 개인의 인적사항과 금지업무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별도의 페이지를 두고 있으며, **제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제재 내용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공개
- 미국의 FINRA: 민원사항 중 제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민원 회수가 3회를 초과하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개
- 호주의 ASIC: 업무금지자 및 부적격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여 **제재를 받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